

# 한국 대학 박물관과 박물관협회의 어제와 오늘

손 보 기

## 1.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고구려의 태학,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등이 있었지만 귀족, 양반 선비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근대의 대학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열리게 된 대학은 미국의 선교활동의 부산물로 일어났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세교육제도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근대의 대학을 세우려고 몸부림 친것은 1922년 6월 22일 한국 사람들만이 모여서 결의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다. 일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1924년에 식민지대학을 세우기로 하고 경성제국대학을 1926년에 열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선교재단의 힘으로 세워진 것으로 오늘날의 대학의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는 1884년에 세워진 광혜원이 차츰 늘어나고 제도를 갖추어 1904년에 세브란스 의과전문학교로 발전하였고, 최초로 제대로의 대학으로 세워진 것은 1907년의 숭실대학이었다. 이렇게 대학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겨레의 뜻과 힘이 자라고 있었기에 대학교육이 이룩되게 된 것이라 하겠다.

1934~45 : 대학박물관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세워지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의하여 경영되어 민족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성전문학교에서 비롯한다. 민간의 한분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모아서 우리나라 선인들의 유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지킨 분중에 가장 으뜸되는 분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문화의 우수한 것을 미학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분이 우현 고유섭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또한 그 터전을 대학교육에서 살리려 한것이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를 대학교육의 자료로, 특히 민속자료를 비롯하여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고려대에 있어서는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는 손진태교수 등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온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도 다음해인 1935년에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모으고, 이를 교육자료로 쓰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는데 여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고유섭 교수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식민지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은 한국사람 학생이라고는 자연계가 12%, 인문계가 37% 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연구는 특수 질병, 약재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조선말, 조선역사, 종교, 민속, 특히 무속 등에 국한된 느낌이었으나, 그도 식민정책수립이라는 목적이 주가 되었다. 따라서 경성제국대학의 박물관 설립도 1940년에야 이루어졌는데 그도 한국사

람인 박영철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그가 수집하였던 서화를 기증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기금을 회사한 것이 토대가 되어 박물관을 마련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 박물관의 수집은 민속, 무속 연구를 주로 하던 일본인 아끼바 교수의 취향에 영향받은바 크므로 만주, 몽고, 뉴기니아 원주민들의 민속품 등이 박영철 기증품 이외에 중요한 수집품이 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 식민지 정책과 싸워가는 입장에서의 박물관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1945~60: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놀랄만한 속도로 많이 세워지고 학생수도 불어났다. 일제에 의하여 억압받고, 견제되고, 제한되었던 교육이 민족의 힘차고 즐기찬 교육 열에 힘입어 대학 교육기관이 늘어났다. “배워야 산다”는 생각은 일제에 의하여 억눌렸으나, 이제 쇠사슬이 풀리자 대학교육기관은 즐기차게 뻗어나가게 되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수가 불어났다. 제2차대전이 끝나고 서울대학은 1946년 8월 22일에 서울대학교 부속박물관으로서 새로 출발했고,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48년 4월 1일에 뒤를 이었다. 그러나 1950년 까지는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은 4~5개 정도이었고, 도서관의 일부로서 자료만 조금씩 모으는 것이 보통이었다.

6.25의 소용돌이를 거처서 50년대에 박물관이 세워진 대학이 중앙대학교(54), 전남대학교(59), 동아대학교(59), 경북대학교(59) 등이고 그밖의 대학이나 대학교 박물관은 60년대 이후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1961~69: 문교부 교육기준령이 1967년 6월 17일 공포되었는데, 종합대학교는 200m<sup>2</sup> 이상의 박물관 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강제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대학박물관을 세우는 직접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립대학교의 총장, 이사장 등 관심이 있어, 문화재를 수집하고 그를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보존 관리하게 하는 풍조가 더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6.25동란 동안, 또 그 이후 도굴 등에 의하여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유물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의 자랑이 될 문화재를 수집하여 대학을 찾는 귀한 손님들에게 보이는 일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나라 선사유물, 미술품, 민속자료 등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고 숨은 문화재를 찾아내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1961년 5월 5일 <한국 대학박물관협회>가 조직되었다.

이 협회가 이룩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협회는 선언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실물에 의한 직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래의 우리 교육이 추상적, 관념적 교육방법에 치우쳤던 폐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제국에 있어서 박물관 사업이 중요시되고 발달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으로 대학 교육에 박물관의 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각 대학박물관이 협조하여 대학 박물관의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각대학의 박물관 또는 참고품실의 운영에 관한 학술·기술·협조를 도모한다.
- 2) 이러한 시설이 없는 대학에는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대학박물관협회가 이룩된 뒤에 문화재 보호법이 다음해인 1962년 1월 10일 공포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 안에 있었던 때의 일이다.

이 협회가 설립되었을 때 가입한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회장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이었으며, 이 협회의 회장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심형구 관장과, 부회장교 고려대학교의 김정학 관장이 협회의 일을 맡아서 하였다.

기관지인 《고문화》 제 1집이 김정학 관장의 편집으로 나오게 되었다.

각대학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 특별전시를 하였고 발굴조사 사업도 하였으며, 협회의 사업으로는 연합전시회를 가졌다.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태도를 발표한 일도 있었다. 연합전시회를 할때마다 특별강사를 모셔다가 강연회를 열었다.

1968년 7월 25일에 문화공보부가 새로 생기고, 문화재관리국이 문화공보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덕수궁 미술관이 국립중앙 박물관에 흡수되었고,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이 1969년 6월 19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각대학 박물관에서 문화재 등록을 출선하여 하게 되었다.

1970~79: 이에 뒤따라 1970년 1월 27일 대통령령 4543호(대학설치 기준령)이 개정 되었는데, 이속에 대학 박물관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12조 1항에는“학생 1,000명 미만까지는 450m<sup>2</sup> 이상, 2,000명 이상은 600m<sup>2</sup> 이상으로 할것”이라고 되어 있다.

각대학 박물관은 전시실을 갖추게 되고 전시를 통한 교육 이외에도 유적지의 발굴 조사, 지표 조사 등에 노력을 더 기울였고, 관장 및 관계 교수, 학예 연구직 등의 인원이 우리나라 선사, 유적지의 발굴 조사를 하여 귀중한 연구를 계속했고, 새로운 발굴, 발견으로 우리나라 과거 문화를 밝히는데 이바지하여 왔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발굴조사, 민속조사 사업에도 각대학 박물관의 학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대학 박물관이 이바지한 바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박물관 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발전을 보았고, 1978년에는 문화공보부에서 박물관법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온 대학박물관 이외에도 사설 박물관, 민간 박물관 등이 있고 알찬 수집을 하여 온곳도 있다. 대학 박물관협회에서는 매년 총회전에 열리는 강연회에 실무자 세미나를 더하여 문화재 정리, 보존, 처리 등에 관한 강의를 열기도 하였다. 또 한편, 박물관법 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978년에 열린 박물관법 초안 토론회에 간사교를 토론회에 참가하게 하였다.

앞으로 동 법이 제정되는데 까지에는 대학박물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최근에 열린 간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었다. 각 대학 박물관은 전시도록을 출간하고 특별전시를 열고 그 도록을 퍼내기도 하여 대학 박물관의 사회교육에도 힘을 기우리기도 하였다.

회고: 돌이켜 보건대, 대학 박물관협회는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중요한 일을 몇가지 들어 본다면, 1967년 9월 13일에는 불국사 3층 석탑과 경주 나원리 5층 석탑이 도굴되었을 때 이 사건을 극히 위험한 징조로보고 이

러한 도굴 및 문화재 파괴행위가 근절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해 8월 19일에는 덕수궁 미술관과 국립박물관의 합병을 반대하고 국립미술관의 신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1975년 6월 2일에는 박물관법 제정에 대한 일에 힘쓸 것을 간사회에 일임하고 그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다. 1975년 10월 8일 간사회에서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가입문제를 토의하였으며, 해외 시찰을 추진하여 중국, 일본의 박물관을 시찰한 바 있었다. 1976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문화협회(ASPAC) 주최 중국 국립역사박물관 주관의 심포지엄에 대표를 보낸 일이 있다.

그동안 고문화를 17집을 내게 되었고, 연합전시회를 17차, 학술강연회도 13차나 갖게 되었다. 처음에 몇 학교밖에 안되었던 회원교가 이제는 43개교에 이르렀다. 대학박물관협회는 바야흐로 새로운 협조와 발전을 이룩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동안의 협회 임원교와 재임기간 및 연합전시회, 강연회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넣으면 다음표와 같다. 정확을 기하려고 했지만 기록이 미비하여 완벽하지는 않다. 우선 참고 자료로서 덧붙이기로 하였다.

####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역대 임원교

회수	기 간	회 장 교	간사교(부회장·감사교 포함)
1	1961. 5. 5—1962. 8. 6 (1963. 5. 4)	이 화 여 대 (고 려 대)	
2	1963. 5. 4—1965. 6. 5	고 려 대	서울, 경북, 진국, 성균관, 숭실, 이화
3	1965. 6. 5—1967. 6. 14	고 려 대	경북, 전남, 수도, 이화, 진국, 성균관, 숭실, 연세
4	1967. 6. 14—1969. 5. 20	이 화 여 대	"
5	1969. 5. 20—1970. 11. 27 (1971. 5. 27)	숭 실 (이 화)	진국, 경북, 고려, 동국, 연세, 영남, 이화
6	1971. 5. 27—1973. 5. 30	이 화 여 대	"
7	1973. 5. 30—1975. 5. 25	진 국 대	경북, 고려, 숙명, 단국, 동국, 연세, 이화, 홍익
8	1975. 5. 25—1977. 6. 19	진 국 대	"
9	1977. 6. 19—1979. 5. 19	동 국 대	고려, 공주교, 진국, 경희, 단국, 동국, 연세, 영남, 이화, 홍익, 동아, 전남

※ 재임기간을 괄호로 묶은 것은 1962. 8. 6일 초대회장 심형구 이화여대 관장이 세상을 떠나셨고, 1970. 11. 27일에는 5대회장 김양선 숭실대 관장이 돌아가셨음을 뜻한다.

그러나 각대학 박물관의 특색에 따라 어느 전문 분야의 보존처리, 또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보존 방법 등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등은 서로가 도와서 정보와 방법을 나누어 가지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자기·토기 등 유물의 수리, 복원 등 문제도 좀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것을 대학 박물관에서 연구하는 곳이 있어야 하겠다.

복원에 있어서나 복제품의 제작도 교육을 위해서는 만들어내서 교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복제품은 전혀 유물이 없이 설명만을 하는 것보다는 나올 경우가 있고, 적어도 느낌은 줄 수 있다.

**박물관 강연회**: 대학 박물관에서 연구 조사 또는 발굴하여 나온 결과를 학술보고서로 발표하는 것과 아울러 보고서를 자기 대학내에서 대학생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잘하고 있는 대학 박물관도 많지만 이러한 결과를 우선 자기대학 학생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문화 유산의 정리·해석을 각학교마다 필요한 분야부터 타대학 박물관 연구관 등을 모셔다가 강의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강의는 사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 이외의 학생에게 베풀어지는 교양강좌의 수준을 지녀야 좋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기에 문화재를 통한 문화의 이해를 쉽게 이룩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감정방법(석기, 자기, 그림, 옷 등등), 보존 방법 등도 포함하여 각시기의 특징 등을 풀이해주는 내용을 강연속에 포함시킨다면 관심을 일으킬 것이고 대학생이 학내 박물관 강좌를 듣고 박물관을 더 자주 찾는다면 대학 박물관의 발전은 더 해질 것으로 믿어진다.

### 3. 대학 박물관협회가 할 수 있는 일

박물관협회는 대학 박물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협조하여 더 발전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알차게 하는 일이 되겠다.

- 1) 연합전시회의 수를 늘려서 봄에만 하는 것을 가을에 한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전시회 성격을 신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과 주제별, 시대별로 하는 전시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서 각대학 뿐만 아니라 민간의 소장자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같은 시대 전시를 한곳에서 또는 같은 주제의 것을 잘 전시하고, 그 제작, 사용, 기능, 문화상의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2) 전시회를 거치면 그 품목의 정리, 설명을 통해서 특징을 찾아 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록과 책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외국에서는 박물관과 신문사가 협조하여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박물관협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느껴진다.
- 3) 대학 박물관협회의 간행물

고문화는 이제 17집을 내게 되었다. 1년에 한번 낼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여러 회원교에서 갖은 수고를 하여 내온 것이다. 역대 회장교를 비롯한 회원교의 끊임없는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회원교의 수가 늘고 인원도 늘어났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고문화의 질을 높이는 문제, 분량을 늘리는 문제에도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박물관의 기본문재인 전시, 정리, 보존, 복원, 출판, 용어 연구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조연이 요구되는 국내 다른 박물관을 위해서 협조하고 가능하면 전통방법을 비롯하여 새로이 연구된 방법 등을 간단히 설명하는 간행물을 내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4) 대학 박물관협회의 도서 자료

그동안 고문화와 교환되는 국내의 기관과의 도서교환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관 등록 및 이용에 있어서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교환관계를 생각한다면, ICOM의 가입문제와 그 자매기관인 ICOMOS (국제 기념물 및 유적위원회)에 대한 가입문제가 있다. ICOM에서도 여러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일을 하고 ICOM 회원이 되면 각자의 소망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ICOMOS가 대학 박물관으로서는 더 긴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ICOMOS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유럽 중심이 되지만 사원, 벽화의 보수, 유적의 보존, 유적의 조사, 유물의 복원 등 여러가지 문제를 연구하는데 실제 답사작업에 참여하고 연구업적의 배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로마에 있는 국제 문화재 보존 복원 연구소에 학예관을 보내어 3~6개월간의 수련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곳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길을 트게 하는 것도 협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5) 회원교 실태 자료—협회로서 회원교 박물관 상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매년 경제기획원을 비롯해서 통계자료를 각 회원교가 따로 내는 등의 일이 있지만, 숫자상의 통계만으로는 궁금한 것이 많다. 회원교의 자료를 서로가 좀 자세히 알게 된다면 서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 분야마다의 이용도를 높여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적어도 그동안의 수집된 내용의 성격과 신수품에 대한 대강을 서로가 알 수 있는 정보를 협회에서 모아서 기관지에 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문화에서 전시교의 자료 소개를 좀더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 분과위원회—이제 회원교의 성격과 특징을 살려서 ICOM분과위원회와 같은 회원교의 분과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대나 주제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에 회원교가 소속되어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협조하여 간다면 위원회를 통한 여러가지 업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고문서의 수집이 강한 박물관 사이에 서로가 협조하여 고문서 정리, 연구를 한다던지 불상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던지, 또는 신석기시대의 석기, 토기를 분과위원회에서 협조하여 분류 연구한다면 학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정책참여—앞으로 제정될 박물관법의 제정에서부터 대학 박물관협회는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전을 도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문화재보존, 전승, 전시, 교육, 감상을 위하여 훌륭한 박물관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박물관을 육성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박물관은 국립 이외에도 대학박물관, 민간박물관이 박물관 목적에 맞는 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에 있어서도 박물관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와 인류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야 하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닌 항구단체이어야 한다. 또 이 항구단체에는 적어도 보존, 정리,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원, 학예관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전시실을 갖추어야 하고 참고 도서실, 자료실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문화의 유물, 유적 및 환경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사회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개에 의하여 연구, 교육, 감상을 하게 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ICOM 자격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박물관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규제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아니될 것이다.

박물관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박물관, 민간박물관을 대표하는 박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박물관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박물관장과 문공부차관을 위원회 위원으로 예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각 협회에서 이를 추천하여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박물관 사업이란 박물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때만 시정시키고 선도해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박물관협회의 규약을 번역해 보았다. 이를 실어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규약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국제분과위원회가 있다. 그 이름을 들어 본다면 아래와 같다.

1. 고고·역사분과위원회(ICMAH)
2. 건축·박물관 기술분과위원회(ICAMT)
3. 응용미술분과위원회
4. 현대미술 분과위원회(CIMAM)
5. 보존분과위원회
6. 복식분과위원회
7. 문헌자료 분과위원회(CIDOC)
8. 교육분과위원회(CECA)
9. 민속분과위원회(ICME)
10. 국제 미술전시위원회
11. 인원 수련위원회
12. 악기분과위원회(CIMCIM)
13. 문학분과위원회
14. 박물관학분과위원회
15. 지역박물관 분과위원회
16. 대중관계 분과위원회(MPR)

17. 자연사분과위원회
18. 과학·기술분과위원회 (CIMUSET)
19. 보안위원회 (ICMS)
20. 유리분과위원회 (GLASS)

관련된 국제협회

1. 농업 박물관협회
2. 울동예술협회 (SIBMAS)
3. 무기전사협회 (IAMAM)
4. 유럽 야외박물관협회
5. 교통 박물관협회 (IATM)

연합전시회 및 강연회

회수	때	곳	강 연 회	실무자 세미나
1	1963. 4. 20—5. 4	이화여대		
2	1964. 5. 2—2. 16	고 려 대		
3	1965. 5. 26—6. 5	경 북 대		
4	1966. 5. 23—6. 11	이화여대		
5	1967. 6. 5—5. 14	전 남 대	이홍직, 백제의 고대국가 성립 문제 황수영, 신라 문무왕릉의 조사 진홍섭, 황룡사지 사리공의 조사	이홍직, 백제와 서해 황수영, 신라 동해의 유적 진홍섭, 경주 신라 목탑지에 대하여
7	1969. 5. 15—20	부 산 대	김양선, 한국 마제석검의 형식 분류 정영호, 양양진전사지—석조 유물을 중심으로	
8	1970. 5. 18—28	충 실 대	황수영, 단석산 신선사의 조사 손보기, 한국초 발견의 구석기 시대 집자리 진홍섭, 경주 인왕리 지하유구의 조사	



회수	때	곳	강 연 회	실무자 세미나
9	1971. 5. 17-24	경 회 대	최순우, 조선시대 선비 화가 정영호, 옥천지구 고적조사보고	장인기, 문화재법 해설 이난영, 박물관학 2, 3의 문제
10	1972. 5. 24-30	경 북 대	전상운, 한국 과학과 기술	이태녕,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에 관하여
11	1973. 5. 1-7	이화여대	김정기, 불국사의 복원적 고찰	김유선, 목조공예품 보존에 관 한 문제
12	1974. 5. 20-25	고 려 대	황용훈, 빗살무늬 문화의 타제 석기 제작방식과 유형 분류 이구열, 대학 박물관과 현대미술	
13	1975. 5. 26-6. 2	홍 익 대	안휘준, 한국 산수화의 발달 이난영, 박물관법 제정에 관하여	
14	1976. 6. 14-19	공주교대	박용진, 백제 연화문 와당의 형식분류 안승주, 백제 고분의 편년 연구	
15	1977. 5. 16-21	동 아 대	손보기, 점말 용굴 발굴 보고 김동호, 창녕·계성 고분발굴보고	
16	1978. 6. 12-17	원 광 대	진홍섭, 이형 석탑의 기단 형식 정명호, 익산 왕궁리 궁탑지 발 굴조사에 대하여	
17	1979. 5. 14-19	경 회 대	정영호, 중원지구 3주기 유적의 조사 이경성, 한국 근대 동양화에 대하여	

## 2. 우리나라 대학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일

전시: 대학 박물관에서는 협회가 처음에 내세운 목적이 제1차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체계있게 진열하여 교육의 목적에 도움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고 보조자료를 쓰고 그 문화상의 기능을 나타내어 유물의 주인, 곧 문화재를 만들고 쓰고, 간직한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복원하여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란 많은 정리, 조사, 발굴, 연구 등을 거쳐야 하며 또 그들의 환경 속에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전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시를 통해서 대학교육의 목적을 도우고 우선은 한국의 문화를 체계있게 이해시킨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의 이해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주어서 이해하여야 더욱 확실해지고 그런 뜻에서는 실물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재, 문화에 대한 사진, 그림 등을 아울러 전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되겠다. 이러한 전시에 있어서도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몇 분야에 힘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시를 통해서 지역사회 관심을 끌어서 대학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이러한 전시를 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지만, 우리의 대학 박물관협회 연합전시회 때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찬조 출품을 하게 한 예는 많았다. 지방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화재의 소장자들의 출품전시를 하게 하고 전시에 의해서 설명, 평가 및 해석 등을 하게 하는 기회를 대학 박물관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특별 출품 전시회의 도록을 통해서 좋은 소개 평가를 더한다면 그 성과는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즉 이러한 전시는 임시 특별전시를 가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씨에 따라 보존된 고문서, 고기록 등을 전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이방면 평가 전시만이 아니라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를 위한 정리:** 대학 박물관이라면 보통 전시로 끝나는 것이고, 참고는 보관을 위한 것으로만 인정되기도 쉽다. 대학 박물관에는 전시실 면적보다도 몇배 되는 넓이의 정리실, 참고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리실 참고 등에서 그 분야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이를 보고 실측하고 비교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다 갖출 수는 없다. 그러나 있는 자료를 다른 연구자가 보고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자료가 놓여진 참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 참고는 유물 성질에 따라, 특색에 따라 참고의 구조 등이 달라야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리된 유물을 참고할 수 있게 마련되면 지방의 일반문화재 외에 고문서, 고기록의 전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지방 개인의 비석까지도 모두 탁본하여 박물관에 보존된다면 뒤의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대학 박물관이 마련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조사·연구·발굴:** 이러한 일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몇몇 대학박물관에서 이미 장기계획을 세워 해마다 계속하고 있다. 지표조사, 발굴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려온 것도 대학 박물관이 이룩한 큰 성과이다. 이러한 조사·발굴은 각자의 전문분야로 자연 나뉘지게 되겠지만 같은 분야의 박물관끼리 협조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좀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대학 박물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조사방법, 발굴방법, 실측방법, 보존 처리방법, 복원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조하는 데서부터 협동 연구 등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조사·발굴 보고서 등 학술연구의 결과를 내는 대학 박물관은 상당수에 이르렀고 도록을 낸 대학도 차츰 늘어났다.

이러한 업적은 지방에서의 고문서, 고기록, 고비석 등의 내용조사도 해나가는 한편 대학 박물관에서 보존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도 아울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단위의 특색이 있는 민속 문화재의 수집, 보존, 전시와 그에 대한 조사연구를 계속하는 대학 박물관도 수

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이들에 대한 보고서도 차츰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대학 박물관에서나 협회에서 권장하여야 할 일이다.

이밖에 우리 나라 농업, 어업 등 생업의 발달을 알아 볼 수 있게 농업사 박물관, 어업사 박물관 등이 대학의 특수성에 맞추어 조사·발굴 되어지기를 바라며 한쪽으로 과학사 박물관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개의 대학에서 이러한 방면의 박물관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방면의 박물관은 역시 대학 박물관에서 기초 작업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존처리·복원문제** : 대학 박물관에서 기초가 되는 보존처리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갖추고 있는 보존과학시설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힘든 일이다.

우선 전시·보관에 있어서도 더 훼손되고 퇴화하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은 알고 처리해야 하지만 원래의 모양이나 재질을 변하게 하는 방법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 附 錄

1974. 6. 14. 코펜하겐, ICOM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국제 박물관협의회 규약

#### 제I장 명칭 및 사무소 등록

제 1 조 본 협회는 국제박물관 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Conseil International Des Musees)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었으며, ICOM이라 부른다.

제 2 조 본 협회는 UNESCO의 승인을 얻어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 도서에 법인사무소를 두며, 영어와 불어를 공식어로 정한다.

#### 제II장 자격 규정

제 3 조 박물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항구단체이며, 문화의 유물, 유적 및 환경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승 및 전시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연구, 교육, 완상을 도와 사회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제 4 조 제 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은 박물관 이외에도 ICOM은 다음 각 항의 기관들은 위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가) 항구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와 같이 보존과 전시를 하는 기관

(나) 자연사, 고고학, 인류민속학상의 유물과 유적, 역사기증물, 또는 유적으로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는 수집, 보존,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동식물 사육장 등과 같은 생존하는 표본을 진열 전시하는 기관.

(라) 자연보호지역

(마) 과학관, 천문관 등

제 5 조 박물관 전문직(종)은 기술 또는 학술상의 특수한 수련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실제경험을 가지고, 전문직의 기본윤리 요강을 준수하는 사람들로 제 3조와 제 4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는 박물관과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 제III장 ICOM의 목적

제 6 조 ICOM은 박물관과 박물관직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비정부 전문기구이다. 이러한 자격으로 본 협회는 UNESCO, ICOMOS, 국제문화재보존연구소 및 각 국가, 지역, 국제, 국내, 정부, 비정부 기구 등의 박물관 기구에 대한 책임자들과 다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자문관계를 유지한다.

제 7 조 ICOM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박물관과 박물관 기관을 정의하고, 지원하고, 박물관직을 설립, 지원, 보강한다.

(나) 박물관 사이와 박물관 직원들 사이의 협력 및 상호협조관계를 수립한다.

(다) 각자의 공동체 내에서의 세계 인민들 사이에 보다 큰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이 수행하는 역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제IV장 회원

제 8 조 ICOM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되는 각국의 국내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한다.

### 제9조 **제가절 개인회원**

제9조 다음과 같은 사람은 아무런(하등의)차별없이 ICOM의 개인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가) 제5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박물관직 구성원들

(나) 전직 박물관원

(다) 박물관 직업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으로서 경험이나 전문봉사로 ICOM이나 국내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기여하므로써 국내위원회가 정식으로 선출한 모든 사람들은 국내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전체 회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 개인회원은 거주하는 국가의 국내위원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동시에 소속하게 되며, 본인이 희망하여 국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가 선택하는 국제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제20조와 제31조 참조). 그 개인회원은 이 두 기구들이 채택한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개인회원은 소속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ICOM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자격을 갖는다. 개인회원의 자격으로 행사되는 투표나 의견의 표시는 그가 소속해 있는 기관이나, 행정부에 아무런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제11조 **제나절 기관회원**

제11조 박물관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 박물관이 속해 있거나 박물관이 의존하고 있는 기관, 박물관의 여러가지 기능중의 한가지 이상의 기능에 공헌하고 있는 기관은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제12조 기관회원은 국내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각국의 국내위원회의 자동회원이 된다.

기관회원은 국제위원회가 승인을 얻어 원하는 국제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 **제다절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에 관한 공동규정**

제13조 ICOM회원 자격은 각국 국내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국내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ICOM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의에 의하여 가입하므로써 얻을 수 있다.

제14조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문화재 매매행위를 할 때에는 개인회원이나 기관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제15조 각 회원은 ICOM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매년 5월 1일 이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각 회원은 그와 교환조건으로 회원증 카아드, 기관지, 총회 참석권, 문헌센터 이용권 및 ICOM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기타의 편의를 제공 받는다.

제16조 회원은 다음 사항에 의해 회원권을 상실한다.

(가) 사임

(나) 연속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상실된다.

(다) 회칙을 위반하거나 박물관직의 윤리나 윤리요강의 위반에 관계된 중대한 이유로 말미암아 국내위원회의 제청이나, ICOM자체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하여 ICOM집행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할때

(라) 본인의 직업·신분상의 변화에 따른 결의에 의할때

### 제17조 **제라절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

제17조 ICOM의 찬조회원은 박물관 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에서 ICOM을 후원하거나 원조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이 될 수 있다. 찬조회원은 ICOM의 기관지와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ICOM 집행위원회와 국내위원회에서 그밖의 편익을 이들에게 줄 수 있다. 찬조회원은 ICOM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지불한다. 찬조회원은 제9조와 제11조에서 규정된 범주에 속해 있지 않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ICOM의 직책을 지닐 수 없다.

제18조 명예회원은 ICOM 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ICOM 총회에서 결정하며, 국제박물관과 ICOM의 목적에 따른 월등한 봉사를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단, 명예회원은 2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명예회원은 회비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제V장 ICOM의 구성 및 조직

제19조 각국 국내위원회는 ICOM의 기본이 되는 단체가 된다.

제20조 ICOM의 각 국제위원회는 ICOM의 사업과 사업계획의 실적을 위한 최고기관을 구성한다. 이 위원들은 절대로 전문가의 성격을 갖는다.

제21조 ICOM의 대표기구는 총회,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의 3기구조로 한다.

제22조 사무국이 행정기구가되며 문헌센터와 지역사무소의 지원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기구들의 기능은 이 기구들의 규약과, 각 기구가 정하는 내규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ICOM 법규 규정은 다른 내부 규정에 우선한다.

#### 제4절 국내위원회

제24조 각국 국내위원회는 ICOM과 ICOM 회원들 사이의 통신 연락을 위한 기본이 되는 기구이다. 국내위원회는 국내에 있어서의 ICOM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박물관 전문직과 ICOM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야 하고, ICOM의 재정확보와 사업수행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내위원회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ICOM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위원회 개인회원은 5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6조 국내위원회는 새로 창설되는 위원회가 ICOM의 기존 규약을 수락하고, 위원회의 집행부서 구성을 통고하고, 내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첨가했다는 선언에 근거하여 ICOM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신규가입 국내위원회는 위원회 회원의 전체 명단이 ICOM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이 첫 일년 분 회비전액을 수령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각 국내위원회는

(가) 자체의 내규를 채택하고

(나) 의장과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다) 최소한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라) 총회에서 국내위원회를 대표할 회원들을 지명하고

(마)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와 유대관계를 수립하고

(바) 제13조에 의거하여 회원 신청을 승인하고

(사) 국내위원회의 연간 사업보고서를 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국내위원회는 가능하면 언제나 국내 차원에서 박물관직을 대표하는 협회나 협회들과 합법의 관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회는 그들의 대표자격이 증명되고 또 ICOM의 국내 위원회를 조직할 권한을 ICOM 집행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제29조 국내위원회가 ICOM의 반부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OM규약에 위배행위를 명백히 저질렀을 경우에는 ICOM집행위원회는 그 해산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 국내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는 집행위원회가 국내의 통신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 통신원은 참관인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 제나절 국제위원회

제31조 제33조(마)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개인회원은 그가 선택한 국제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으며, 그는 한 위원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선택한 국제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ICOM회원들만이 국제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제32조 국제위원회는 다음 경우에 설립할 수 있다.

(가) 최소한 회원 10명의 발의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이며, 창설되는 국제위원회 창립위원들은 새 위원회의 집행부 임원 명단과 ICOM규약에 일치하는 내규와 사업계획서 일체를 ICOM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 집행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위원회의 집행부 임원 구성과 첫 사업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모든 국제위원회는

(가) 각 위원회의 내규를 채택한다.

(나) 집행부위원을 선출하고 의장의 임기는 6년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ICOM총회때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최소한 3년에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ICOM총회에 그 국제위원회를 대표할 회원들을 지명하여야 한다.

(마) 제10조에 따라 모든 회원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바) 각 국제위원회의 연간사업 보고서를 ICOM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COM의 모든 ICOM 회원은 전문관계 안전에 관한 한 각자가 소속하는 국제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34조 제 9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적어도 2/3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들과 제1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구들은 그들의 분명한 요청과 ICOM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국제위원회에 통합될 수 있다.

통합의 조건은 새 국제위원회의 창설을 규정한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하다. 그밖에 통합된 지 일년내에 그 기구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ICOM회원이 되어야 한다.

ICOM에 통합된 국제기구는 그 자체의 내규가 ICOM의 규약에 의하여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제35조 집행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한 이유중 한가지 사유로 ICOM자문 위원회의 천거에 의하여 국제위원회의 해산이나 정권(혹은 통합된 국제기구의 분리에 의한)을 결정할 수 있다.

(가) ICOM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나) 국제위원회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다) 사업이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을 때

(라) 사업 계획, 세칙의 작성을 계속 지연시켰을 때

## 제다절 총 회

제36조 총회는 ICOM의 최고기관이다. 총회는 ICOM의 규약을 채택, 수정하며 총재와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3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며 집행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 결정한다.

총회에서의 결의는 제소를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 된다.

제37조 ICOM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총회는 ICOM의 총재가 주재하며, 총재의 부재시에는 부총재중의 한 사람이 이를 주재한다.

제38조 총회는 3년마다 정기회의를 갖는다. 개최일자와 장소는 회원 총회의 개최일자 장소와 동일하다

제39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가) 각국 국내위원회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나) ICOM집행위원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제40조 총회에서의 투표권 행사와 서신으로 협의를 할때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 각 국내위원회가 지명하거나 선출한 5명의 개인 회원이 행사하되 그중 한사람은 가능하면 집행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나) 각 국제위원회나 통합된 국제기구가 임명하거나 선출한 2명의 개인회원들이어야 한다.

동일한 위원회의 회원에게 대리권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제41조 총회의 정족수는 제40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계산한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된다 만일 이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총회는 24시간내에 동일 장소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차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수에 관계없이 총회의 토의는 효과를 발생한다.

## 제라절 집행위원회

제42조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총회를 제외한 ICOM의 모든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총괄하며 회비의 비율을 결정하고 회원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ICOM의 재무행정과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감독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다음 총회 사이의 기간에 총회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집행위원회는 다음 1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가) ICOM총재

(나) 자문위원회의 의장

(다) 부총재 2명

(라) 재무 1명

(마) 회원 5명

자문위원회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 집행위원회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재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공석이 3년 기간중에 생길 경우 집행위원회는 신임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나, 신임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5조 집행위원회는 ICOM을 대리하여 ICOM의 규약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획득, 차용, 보관 및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46조 집행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2/4분기와 4/4분기에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총회 개최 직전, 직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과반수 위원의 결의를 얻어 임시회의와 비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7조 집행위원회 위원은 ICOM 집행위원이 아닌 다른 ICOM 회원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이나 대리인 한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단순 과반수로 결의하고 출석위원(위임된 대리포함) 7명 이상으로 한다.

제48조 ICOM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중임할 수 있다.

총재는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총재는 수입과 지출의 적절한 행정을 감독한다. 다음 집행위원회 개최까지의 공백기간에 총재는 ICOM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뒤에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재는 유네스코와 ICOMOS (국제 박물관 유적협의회), 국제 문화재 보존센터(연구소), 각국가 기관들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ICOM을 대표한다.

부총재들은 총재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총재를 대리한다.

제49조 재무관은 현금지불을 하며, 공인 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총회나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회계보고와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필요시에 집행위원회가 위원 이외의 인원 중에서 선출한 보조 재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마절 자문위원회**

제50조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총회를 자문한다. ICOM의 기능, 재정, 사업계획, 회원에 대한 봉사, 국내위원회와 국제위원회의 규약, 전문지 윤리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 등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문위원회는 ICOM위원의 여러가지 전문 관심분야를 감안해서 15명의 집행위원회 위원 후보명단을 총회개최 최소한 60일 이내에 전 회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자문위원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되어진다.

(가) 각 국내위원회 의장이나 그 대표자들

(나) 각 국제위원회의 의장이나 그 대표자들

(다) 통합된 국제기구의장이나 그 대표자들

집행위원회 위원과 각국 통신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53조 자문위원회는 임기 3년의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1회 재선될 수 있다.

제54조 자문위원회는 매년 집행위원회를 여름 회기 이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의 제청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 1/4이상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 **제바절 사무국**

제55조 사무국은 총재와 집행위원회의 권한하에 있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다음의 사항에 책임을 진다.

(가) 회원에 대한 봉사의 관리

(나) 각 국제위원회 사업 진행에 대한 알선

- (다) 총회와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업계획의 준비, 집행, 평가, 보고 제출
  - (라) ICOM의 예산과 재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재무관에 대한 보조
  - (마) 유네스코의 사업계획 실현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사무국에 대한 보조
- 제56조 유네스코-ICOM문헌센터는 그 장의 관할하에 있으나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ICOM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두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ICOM의 관심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의 수집과 보존 하는일
  - (나) 이러한 정보를 보급시키고 또 유네스코 직원, ICOM회원, 가능하면 모든 전문가와 학생 및 자격있는 연구자에게 전달 하는 일
  - (다) 정보 보급의 개선책과 중대책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일.
  - (라) 지역 문헌센터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 사업의 협동을 꾀하는 일
  - (마) 문헌과 정보 분야에 있어서 특히 훈련생의 교육을 통해 국내 위원회와 전문직 협회를 보조 하는일
  - (바) 각 국제위원회의 문서업무(안내서, 질문서, 목록작성 등)를 돕는 일
  - (사) ICOM사무국의 문헌, 정보, 서지(문헌목록)성격의 업무를 돕는 일
- 제57조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위한 지역 사무소를 설립할 권한을 갖는다. 이 지역사무소는 그 지역내에서 ICOM사무국의 모든 기능이나 또는 한가지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지역사무소는 사무총장 책임하에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는 ICOM회원이 통괄할수 있다.
- 제58조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고용조건과 보수 규정을 정하고, 모든 분쟁을 조정한다.

## 제VI장 정규사업

### 제가절 회원총회

- 제59조 회원총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와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3년마다 개최한다.
- 제60조 회원총회에는 모든 ICOM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모든 등록된 회원 참석자는 한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1조 회원총회는 ICOM의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ICOM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박물관 직업에 관한 실제 및 이론상의 문제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한다.

### 제나절 기관지

- 제62조 ICOM사무국은 가능하면 전회원에게 배포할 정보에 관한 기관지의 발행을 보장한다.

## 제VI장 재 정

- 제63조 ICOM의 재원은 다음에 의거한다.
- (가) 집행위원회가 확정된 회비
  - (나) 간행물의 판매 및 구독료, 회원 등록비 등과 같은 규약에 의한 활동에 의한 수입금 등
  - (다) 보조금, 기부금 및 유산(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특별사업과 보통사업의 실현을 위한 계약금(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4조 정식으로 설립된 ICOM국내위원회가 있는 국가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특별한행구좌를 개설하여 그 나라에 있는 ICOM의 재산으로 자유로히 양도할 수 없는 기금을 예금할 수 있다. 단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 그나라 외환관리법에 합법이라야 한다.

재무관은 이러한 기금의 액수와 용도에 관한 연간 회계보고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Ⅶ장 규약의 적용, 수정 및 해산**

제65조 ICOM 집행위원회가 채택, 수정한 ICOM의 제규약은 제규약을 적용하는 기본이 된다.

제66조 현행규약은 총회가 채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각 국내위원회와 국제위원회는 1년 이내에 신규법에 따라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1년내에 ICOM 내규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67조 총회는 그 법규를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수정안의 통과는 2/3이상의 다수 표결에 의한다. 수정안은 총회 개최전 최소한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을 통하여 각 국내 위원회와 국제위원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ICOM을 해산하기 위한 총회의 결정은 투표권을 가진 총회 참석자의 2/3 이상의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해산당시에 이 보유한 모든 재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의하에 ICOM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구에 양도하여야 한다.